

# 공정위, '97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
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(수)에 열린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위원회에 5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.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'9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 중점추진방향

- ◇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규제개혁을 적극 추진
- ◇ 대규모기업집단의 차입에 의한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
- ◇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
- ◇ WTO와 OECD를 중심으로 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
- ◇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고객만족행정으로 대민 서비스를 강화

## I. 경제규제개혁의 적극 추진

### 〈경제규제개혁의 기본방향〉

-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여 경쟁촉진을 도모
-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감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혁 수단을 합리화하여 원활한 개혁을 추진
-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는 건축, 산업 입지 등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규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
- 개방화, 세계화추세에 따른 경쟁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의 규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

## 1. 그 동안의 추진실적

1. 상반기 중에는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8개 분야, 28개 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개혁을 추진

### 1) 기업창업 및 공정입지 관련규제의 완화

- ① 주거지역에 비공해 소규모공장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
- ② 첨단산업시설의 신·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
- ③ 개별공장의 입지규모 제한 완화

2)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

- ④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
- ⑤ LNG 수출입승인제도 폐지
- ⑥ 전기공사업 면허제도 개선
- ⑦ 축산업의 허가·등록제 개선
- ⑧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
- ⑨ 항공산업의 신규노선 진입제한 완화
- ⑩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

3) 물류시설 관련규제의 완화

◇ 그동안 제조업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물류시설이 입지, 세제, 부담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어 물류비용 상승 및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

- ⑪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의 입주제한 완화
- ⑫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
- ⑬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규제 완화
- ⑭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
- ⑮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

4)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의 완화

- ⑯ 회사채발행제도 개선
- ⑰ 유상증자 물량제한 규제 완화

5) 품질인증·검사제도의 개선

- ⑱ 자동차 안전검사제도 개선
- ⑲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개선
- ⑳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

6)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

- ㉑ 건축관련 심의제도 간소화

- ㉒ 공장구내 가설건축물의 설치규제 완화

7)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관련규제의 정비

- ㉓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
- ㉔ 입찰보증금제도 개선

8) 사업자단체관련 규제의 완화

◇ 공정위에 신고된 중앙단위의 623개 사업자단체 중  
 • 단체 설립이나 회원가입의 강제, 단체에 의한 가격 결정 등을 행하고 있는 57개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경쟁제한적인 관행 및 제도를 정비

- ㉕ 사업자단체의 설립·가입 및 회비납부 자율화
- ㉖ 사업자단체의 가격규제 개선
- ㉗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감시 폐지
- ㉘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 완화

2.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큰 3개 분야, 12개 과제의 개혁방안 마련  
 (10. 2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의결)

1) 중소기업자 관련 규제의 완화

- ① 중소기업의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 의 무매입 면제
- ② 전기·전기통신공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 출자제도 완화
- ③ 인쇄소 등록요건 완화
- ④ 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 및 증차시 총당 되는 차량의 차령제한 완화
- ⑤ 컴퓨터게임장의 설치 및 이용요금 규제 완화
- ⑥ 옥외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절차 간소화

2) 국민불편 관련 규제의 완화

- ⑦ 건축물 철거관련 절차 개선
- ⑧ 건축물 용도변경시 필요한 도면의 작성 자격자 범위 명문화
- 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
- ⑩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절차 개선

3) 공동주택 관련 규제의 완화

- ⑪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제도를 개선
- ⑫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축절차를 간소화

2. 그 동안의 규제개혁실적 평가

1. 긍정적 측면

- 1) 진입규제, 창업, 물류, 품질인증, 자금조달 등 8개 분야, 28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수립 · 확정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단기 간내 상당부분 해소
- 2)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

2. 미흡한 측면

- 1) 기업의 고충처리적 성격의 단위과제 위주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종합적 · 체계적 개혁에는 미흡
- 2)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

3. 향후 추진계획

- ◇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에 대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
- ◇ 이익집단의 반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반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확보토록 노력

- 1.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혁을 추진
-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“덩어리”규제 위주로 11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

〈대상분야(11개)〉

- 1)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시급한 분야(6개) : 물류 · 운수, 건축, 건설, 유통, 정보통신, 주류
- 2) 복잡한 “덩어리”규제의 정비가 시급한 분야(2개) :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, 환경
- 3) 경쟁라운드에 대비하여 정비가 필요한 분야(1개) : 개별법근거 카르텔(59개 법률 · 72개 제도)
- 4) 기타 경쟁제한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(2개) : 전자자격서비스, 수출입관련규제

- 동 과제는 KDI,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
-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, 건축, 정보통신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청회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방안을 마련
- 건설, 유통, 전자자격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'98 상반기중 개혁방안을 마련

2. 규제전수조사 및 규제일몰제 작업을 추진

- 재경원, 통산부 등 19개 경제관련 부처 · 청으로부터 기관별 규제전수현황과 규제개혁계획을 접수(총 규제건수 : 6,915건)

\* 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부처·청(19개)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접수

□ 작업대상

- 부처별 규제건수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규제총수를 정확히 조사
- 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심사
- 규제의 경제제한성이나 타당성 등 내용을 실체적으로 심사

□ '97 하반기에는 작업량·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의 심사에 중점

## II.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

### 1. 경제력집중 현황 및 자율시정 여건

#### 1) 경제력집중 현황

□ 30대 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, 계열사 및 영위업종수가 증가추세

	'93	'95	'96	'97
- 국민경제상비중(%)*	38.1	40.7	-	-
- 평균계열사수(개)	20.1	20.8	22.3	27.3
- 평균영위업종(개)	18.3	18.5	18.8	19.8

\* : 광공업출하액 기준 30대 집단의 점유비중임

□ 차입에 의한 부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 ( '96말 기준, % )

	제조업 평균	30대	미국 ('95)	일본 ('95)	대만 ('95)
- 부채비율	335.6	386.5	159.7	206.3	85.7
- 자기자본비율	24.0	20.6	38.5	32.6	53.9

□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주요시장을 독과점

	'95	'96	'97
- 시장지배적 품목 중 30대 집단의 비율	59.4%	64.3%	70.5%

□ 동일인 중심의 소유·경영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

- 동일인은 평균 3.7%의 소유지분으로 40~50개 계열사를 지배

	내부지분율				기타
	동일인	특수관계인	계열사	계	
소유지분	3.7%	4.8%	34.5%	43.0% <sup>1)</sup>	57.0%

- 주요 의사결정을 동일인의 권위적·자의적 판단에 의존

□ 계열사간의 채무보증,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

#### 2) 경제력집중 폐해의 자율시정 여건

- 자본시장·상속·증여세제 등의 미흡으로 소유집중 및 경영권 세습
- 금융개혁, M&A시장의 활성화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감시기능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



- ◇ 이와 같이 경제력집중 문제가 자율시정될 수 있는 여건은 미성숙
- ◇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, 지배구조의 선진화, 금융대출관행의 개선 등 자율시정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

2.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

1)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

- '97 대규모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는 '96년에 비해 다소 증가 (단위: 10억원, %)

연도	'96.4	'97.4	증감(비율)
· 순자산액(A)	54,829	61,343	6,514(11.9)
· 출자총액(B)	13,572	16,876	3,304(24.3)
· 출자비율(B/A)	24.8	27.5	2.7

- 채무보증비율은 '97. 4월 현재 47.0%로 '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(단위: %)

연도	'93.4	'94.4	'95.4	'96.4	'97.4
비율	342.3	169.3	95.2	55.9	47.0

-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초과금액의 해소를 적극 유도
  - '97. 4. 1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는 27개 기업집단 171개사로 초과금액은 1조9,798억원이며,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는 24개 기업집단 80개사로 초과금액은 6조6,789억원임
  -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을 점검하여 법정 유예기한('98. 3. 31) 내에 차질없이 해소하도록 유도
- 출자총액제한·채무보증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미편입계열회사를 철저히 조사·시정함으로써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

2)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·감시활동을 강화

-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기존의 상품·용역 뿐만 아니라 자금·자산·인력분야의 지원행위도 포함
- 이에 따라 자금·자산·인력분야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내용을 객관화·구체화하기 위하여 「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」을 제정('97. 7)
  - 중점심사대상을 규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시정

〈중점 심사대상〉

- 지원주체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이고
- 지원객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며
- 지원크기가 일정규모(지원금액 년 1억원 이상등)인 경우

-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

3.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 시장구조로 개선

- 우리 나라 상품시장의 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
-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26개 품목을 「우선개선 대상품목」으로 선정('96. 11)
- 앞으로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
  - 주요독과점 품목, 지역독과점,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과제로 연구중

4) 기업결합 제도의 효율적 운영

- 규제완화, 개방화추세에 대응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기업결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

\* '93~96중 연평균 증가율 : 46%

- 기업들의 구조조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제한가능성이 작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결합제도를 개선
  - 기업결합신고기준 상향조정 : (자산총액 200억원→1,000억원 이상)
  - 간이신고제 도입 : (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)
  - 기업결합신고를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로 전환
- \*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의 합병·영업양수 등에 한해서만 사전신고
- 한편,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해 나가되, 국제경쟁력강화 필요성 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

### III.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

#### 1. 공공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

- 거래상대방에게 우월적지위를 갖는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노력을 강화
-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민간부문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7개 주요 정부투자기관 및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태조사 중

#### 2.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

- 기업간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간 공동행위(담합)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, 특히 입찰담합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계획
  - 가격담합,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시의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
  -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의 경우 증거수집 등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보수집체제를 구축

#### 3.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

-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맹사업(프랜차이즈)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『가맹사업(프랜차이즈)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』에 관한 고시를 제정·시행('97. 4)

#### 〈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〉

-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태, 사업경력 등의 정보를 가맹계약자에게 제공치 않는 경우
- 계약 종료 후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의 종사를 금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
- 가맹점포의 실내외설비의 설치를 특정인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

- 백화점업자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 중소기업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백화점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
  - 『백화점업의 유통거래개선을 위한 정책연구』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시안을 마련한

후,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  
시개정을 추진('97. 12)

**4.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**

- 원사업자의 도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4. 1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
- 하도급법상 과징금부과기준을 제정·시행('97. 6)
  - 동 과징금 부과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, 방법 등의 내부기준을 제정·시행
-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

**5.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**

- 부당한 표시·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·발전
  - 소비자피해가 많고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표시·광고지침을 제정
    - 그동안 주택, 환경, 금융상품, 상가분양 및 임대, 수상·인증 등 5개 분야에 대한 표시·광고지침을 제정·시행
    - 앞으로 보험상품, 통신판매 등에 대한 표시·광고 지침도 제정할 계획
  - 「비교 표시·광고 등에 관한 공정거래지침」 제정을 추진
  - 가칭 「표시·광고등의공정화에 관한법률」 제정을 검토

\*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의 표시·광고 의무화, 정보공개명령, 광고실증제 등의 도입을 검토

-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, 의약품 등 18개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승인·시행
- 분쟁과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이용, 은행여신거래, 백화점 임대차 등 6개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·보급하는 등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
  - 앞으로 주차장 이용, 제2금융권 여신거래, 회원제시설 이용분야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승인·보급할 계획
- 개별적인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 및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조사·시정
-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할인특매(세일) 기간제한 폐지
-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판촉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경품규제 완화('97. 1)
  - 일정규모 이하 기업의 경품제공행위 자율화
    - 제조업 :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
    - 기 타 :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
  - 공개현상경품제공의 총액한도 폐지 (총전 1,500만원)

**IV.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**

**1. 경쟁정책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 동향**

-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감에 따라 국제규범과 관행의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
- 이에 따라 OECD 「경쟁정책위원회」와 WTO 「무역과 경쟁작업반」을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
  - OECD 「경쟁정책위원회」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첫단계로 '96. 10월 이후 가격담합 등 경성(hard core)카르텔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
  - WTO는 '96.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「무역과 경쟁 작업반」(working group)을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

## 2. 대응방향

- 경성카르텔 등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
  - '97. 2월 위원회에 「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대책반」을 설치하여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대응방안 수립
  -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
  -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경쟁정책 세미나 개최
-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및 국제간 협력체제의 강화

## V.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강화

### 1.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소회의제도를 도입·운영('97. 4)
-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모니터제도를 도입·운영('97. 6)
-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사업자 및 일반국민들의 이해증진과 자율준수분위기가 확산을 위해 교육·홍보를 실시
  - 사업자,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령의 개정내용, 개정 할인특매고시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걸쳐 교육을 실시
    - 대규모기업집단 및 표시·광고 관련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총 8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(총 6,395명 참가)
  - 일간지의 「경제교실」란에 공정거래제도 설명을 연재하는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적극 추진
  - 우리 나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영문 소개책을 발간하여 주한외국대사관, 외국경쟁당국 등에 배포

### 2.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

-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·시행('97. 6)
-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'9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법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



한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(법 제71조제2항)

-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발지침을 제정·시행

□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산정을 위해 『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』을 제정·시행('97.4)

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

- 부당내부거래, 위장계열사 조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국세청 및 증권 감독원 등과의 정보교류채널을 구축
- 대기업의 중소기업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『중소기업관련 불공정거래 정기실태조사』에 공정거래위

원회가 참여

- 입찰담합, 고발 등 공정거래 관련사건의 검찰소유 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「공정거래사범협의회」를 적극 활용

### 3. 대민 서비스 강화

□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('97. 4)

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령 및 제도 안내, 사건신고와 관련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 상담제도를 활성화

## '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

본 협회는 지난 4월 15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『'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』을 출간하였다.

『'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』은 지난 해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, 약관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, 관련된 기타법령과 중요한 공정거래용어의 해설도 수록하였다. 또한 부록편에는 공정거래제도의 변천연혁과 공정거래법적용제외대상 및 과징금제도, 공정거래사건처리절차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.

※ 『'97 공정거래관련법규집』의 판매가는 30,000원이며, 구입신청 및 문의는 T.775-8870~2(조사과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